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5일, 이병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심
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병진의원)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

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가 축산물 구매 시 관련 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소에 대한 이력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8. 12. 시행되었음.

이후 이력관리 대상에 돼지를 포함하여 2014.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력관리 대상에 닭(계란), 오리를 추가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 1. 시행되었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실제 출생 또는 도축 당시¹⁾ 부여된 이력번호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1) 소의 경우 출생 시 이력번호 부여, 도축·유통 단계에서 동일한 이력번호 사용함. 돼지, 닭, 오리는 도축하려는 경우 이력번호 부여

【 축산물 이력제 단속에 따른 최근 5개년 적발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평 균
건 수	654	610	438	565	554	564.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2025.1. 22.) 제출

상기의 축산물이력제 단속 현황과 같이 매년 평균 564건의 범 위
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3년 위반행위별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그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되었음.

이는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 상 이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처벌수준이 위반행위 대비 경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도축, 수입,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수준(현행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
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거짓으로 이력
번호를 표시 또는 게시함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의 운영 취지가 형해

화)되는 측면과 거짓 표시 관련 유사 입법례의 처벌규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에서는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 또는 미 표시 하지 않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동법 제35조에서는 제32조제2항제6호 등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 등에 따른 과태료가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개정안은 ‘거짓으로 이력번호를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면서 제32조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항을 변경하면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35조⁴⁾에서 인용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 조항이

2) 백화점에 농협도 어졌다...못 믿을 '축산물 이력제' / SBS(2024.10.29.)

국감장 한우도 '모두 가짜'...뽕 뚫린 축산물 이력제 / SBS(2024.10.24.)

'투플' 한우 샀는데 육우?...구멍 뚫린 '축산물 이력제' / SBS(2024.10.22.)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바, 제35조를 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둘째,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 제35조를 수정할 경우 법 시행 이전 기존 법률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존재할 수도 있는바, 시행 이후 개정 법률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건수와 누적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 제18조제3항⁶⁾에서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판매업자 등이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이나 제32조제3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③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는 반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바, 개정안 심사 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개정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바,

이에 대한 계도 기간의 필요성과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종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 중 개정되는 조문(제32조)의 내용에 맞추어 제35조를 수정하고,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의 사항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32조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신설 및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제35조를 수정하고,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를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2조제3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4”로, “벌금”을 “징역, 벌금”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횡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부터 산정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u>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u>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제35조(위반사실 공표) (현행과 같음)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 ----- -----제 32 조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 지, 제 32 조 제 3 항 제 5 호 · 제 6 호 · 제 6 호 의 2 · 제 6 호 의 4 ----- ----- -----징 역, 벌금----- ----- ----- ----- ----- ----- ----- ----- ----- ----- -----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위반사실 공표 시 횡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횡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부터 산정한다.</u> <u>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제34조제1항제17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를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2조제3항제5호·제6호·제6호

의2·제6호의4”로, “벌금”을 “징역, 벌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포 시 횡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횡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부터 산정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벌칙) ① (생략) <u><신설></u>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u> <u>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u> <u>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u> <u>4.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u> <u>③ -----</u> <u>-----</u> <u>-----.</u> <u>1. ~ 5. (현행과 같음)</u> <u>6. -----</u> <u>-----아니한 자</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u>아니하거</u>	

<u>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u>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u>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u>	<u><삭 제></u>
<u>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u>	
<u>한 자</u>	
6의4. ~ 7. (생 략)	6의4.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8. -----
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	-----
별표를 붙이지 <u>아니하거나 수</u>	----- <u>아니한 자</u>
<u>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u>	
<u>거짓으로 표시한 자</u>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4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과한다.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17. -----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u>아니</u>	----- <u>아니한</u>
<u>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u>자</u>
18. ~ 21. (생 략)	18.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
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
<u>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u>	<u>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u>
<u>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u>	<u>지, 제32조제3항제5호·제6호·제</u>

[illegible]